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와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불법운행 택시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포괄하는 제명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 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용어 정의에 추가(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8호 및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를 “이 조례는”으로 하고, “택시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란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불법 유상운송 행위”란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9.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제3조제2항 중 “행정처분일”을 “행정처분일 또는 형사처분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업체명·차량번호”를 “차량번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조의”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란 다음에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란 및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15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
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일로부터 5일 이내
에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야 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
청) ①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
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생략)

법 유상운송)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
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9.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
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② -----

-- 행정처분일 또는 형사처분일

-----.

제5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
청) ①-----

-----.

1. (현행과 같음)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u>업체명·차량번호</u> 등 3. (생략) ②, ③ (생략)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② (생략) ③ <u>제3조의</u>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 <u>차량번호</u>--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3조제1항</u>----- ----- ----- ----- -----.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제51조의3(포상금의 지급) - 제89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3(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